

의안번호	2202074
의 퇴 인	김종양의원
회 답 일	2024. 9. 26.
추계번호	24D2220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2조(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	-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의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지에서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오염 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음(제9항 신설) -국방부장관은 토양 오염 제거와 관련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사에게 정화 사업을 위탁할 수 있음(제10항 신설)	재량규정
2	안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지원)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장기분할상환 대상을 사회기반시설까지 확대(제2항제4호)	재량규정
3	안 제35조(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대상·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2조(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 제9항 및 제10항 신설	미대상: 현행법 제12조제5항¹⁾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환경조사 및 치유’ 사업을 통해 반환공여구역의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고 있으며, 현재 각 구역마다 오염정화시설을 설치하여 토양 오염을 제거하고 있음.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에 따르면 개정안이 시행되어 오염 토양을 구역밖으로 반출하여 정화하게 될 경우, 기존에 설치된 오염정화시설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예산이 절감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임. 따라서 이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는 예상되지 않으므로 미대상 사유에 해당 -참고로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세부사업인 ‘환경조사 및 치유’ 사업의 최근 5년간 평균 예산은 52,436백만원임(2024년 기준 54,223백만원)
2	안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지원) 제2항제4호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제가 어려운 경우

3	안 제35조(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제2항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	--

Ⅲ. 미첨부 사유

가. 안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지원)제2항제4호

- 안 제14조제2항제4호는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장기분할상환 대상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²⁾에서 정한 사회기반시설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 이에 따른 재정수입이 감소할 수 있음
- 현행법³⁾에 따라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 추진을

- 1) 현행법 제12조(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 ⑤ 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을 징발해제 또는 양여, 매각 등 처분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가 지상물 또는 지하매설물의 계속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 이 경우 활용을 희망하는 지상물 또는 지하매설물을 제외한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 오염 등은 제거하여야 한다.
 2. 국방부장관이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의 제거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복구를 의뢰하는 경우
-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도로, 철도, 항만, 하수도, 하수·분뇨·폐기물처리시설, 재이용시설 등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 나. 유치원, 학교, 도서관, 과학관, 복합문화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등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 다. 공공청사, 보훈시설, 방재시설, 병영시설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용시설 또는 생활체육시설, 휴양시설 등 일반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하는 공공용 시설
- 3) 현행법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지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반환공여구역내의 국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 소요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반환공여구역이 반환될 당시 하천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하천법」에 의해 하천으로 편입되어야 하는 토지
 2.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토지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반환공여구역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5년 이상 20년 이하 장기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 피징발자, 피수용자가 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주한미군 이전으로 인한 생계대책 대상자, 이주대책 대상자를 위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4. 제10조제1항제5호의 사업시행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만,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종료 전까지 분할상환하는 경우에 한한다.

-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반환공여구역내의 국유지 매입 소요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하고 있으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토지매입비를 5년 이상 20년 이하 장기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다만, 현시점에서 반환공여구역내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매입 규모를 예측하기가 어려우므로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장기분할상환 대상 확대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액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나. 안 제35조(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제2항

- 안 제35조제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관한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과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나, 개정안에서 감면 사항이 구체화되지 않아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재정 수입 감소액을 산출하기가 곤란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지수현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지수현	02-6788-4831	zisu37@nabo.go.kr

[참고 1] 반환 예정인 주한미군공여구역 현황

	위치	기 지 명
1	서울 용산	용산기지(잔여)
2		수송부
3		캠프 모스 일부
4	경기도 의정부	캠프 스탠리
5	경기도 평택	CPX 훈련장(잔여)
6		캠프 험프리 소총사격장
7		알파탄약고
8	경기도 동두천	캠프 모빌(잔여)
9		캠프 케이시
10		캠프 호비 본체
11	전북 군산	군산비행장 일부

주: 주한미군기지 통·폐합관리계획(2004)에 따라 반환 대상 결정 후 순차적으로 반환 중이며, 2024년 9월 기준 69개 기지가 반환 완료되었음

자료: 국방부, 2024.9.